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 
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84호
- 나. 제출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알코올 오남용 등 음주 피해 감소를 위한 조기 선별과 재활을 지원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음주청정지역 용어를 금주구역으로 수정하여 금주에 대한 경각심 제고(안 제2조, 제3조, 제10조)
- 나.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재활 지원(안 제9조)
- 다.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 신설(안 제12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8조의4, 제34조 제3항 제1호
- 「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3의2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,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·이의신청 조항 신설하며,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
- 본 조례 제9조 신설은 부서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금주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알코올 의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나아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의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본 조례 제12조 과태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 제3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3의2에 의거 법령의 위임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는 것을 명시화 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금주구역 지정 조례 개정 자치구 현황 1부. 끝.

##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24. 8. 17.] [법률 제19645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**제3조(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9.]

**제34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1999. 2. 8., 2002. 1. 19., 2011. 6. 7., 2016. 12. 2., 2017. 12. 30., 2019. 12. 3.>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

1의2.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
1의3.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

를 판매한 자

2.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

3.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·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

4.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
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<신설 2002. 1. 19., 2003. 7. 29., 2011. 6. 7.>

1.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

2. 삭제 <2011. 6. 7.>

3.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0. 5. 27., 2016. 3. 2., 2017. 12. 30., 2020. 12. 29.>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7. 12. 30.>

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[제목개정 2016. 12. 2.]

##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[시행 2023. 9. 29.] [대통령령 제33755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**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등)**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2. 12. 7., 2017. 5. 29., 2018. 12. 18., 2021. 6. 15., 2021. 11. 30.>

1.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

1의2.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·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(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2.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

3.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: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3의2.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: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4. 법 제34조제3항제2호(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경우: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[전문개정 2011. 12. 6.]

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1. 11. 30.>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 (제33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다.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	법 제34 조 제 3 항 제1호	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		

## 붙임 2

## 금주구역 지정 조례 개정 자치구 현황

자 치 구	제 정 일 (개정일)	조례 용어	과 태 료 조 호 항	추진현황	금 주 구 역 지 정 여 부	과태료 부과 현황	금 주 단 속 인 력 현 황	금 연 단 속 인 력 현 황
강 동 구	2009.07.29 (2024.03.20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유	-	금연단속과 겸직	3명
강 서 구	2021.07.19 (2023.07.26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무	-	없음	5명
관 악 구	2011.12.29 (2023.04.20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무	-	없음	2명
광 진 구	2009.11.17 (2022.10.17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유	2건	금연단속과 겸직	2명
구 로 구	2024.05.19	금주구역	무	개정완료	-	-	없음	4명
동대문구	2018.12.13 (2023.12.28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무	-	없음	4명
마 포 구	2017.06.08 (2022.03.24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무	-	없음	4명
성 동 구	2019.09.17 (2022.11.10)	금주구역	유 (10만원)	개정완료	유	-	금연단속과 겸직	6명
중 구	2012.11.06 (2022.03.04)	금주구역	유 (5만원)	개정완료	무	-	없음	4명
중 랑 구	2010.12.31 (2022.11.24)	금주구역	유 (5만원)	개정완료	유	2건	금연단속과 겸직	4명